기독일보

2021년 5월 10일 월요일 (음력 3월 29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1794호

"대북전단금지법의 법리적 허구성 지적 않을 수 없어"

태영호 의원, 경찰이 박상학 대표 사무실 압수수색하자 성명 발표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이 최근 경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최근 발표했다.

태 의원은 "6일 경찰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우리 국민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수사 지시 나흘 만"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우리 국민이 형사처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듯하다"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 의원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법리적 허구성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개정의 취지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한다. 얼핏 들어보면 법 개정 취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보호에 집중한 것 같다. 그러나 법의 구체적 조항들을 읽어 보면 정부와 여당이 김정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을 만들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과욕을 부렸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첫째로, 정부와 여당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데 법 개정의 초점을 두었다"며 "개정 법률을 들여다보면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매개물 게시는 '군사분계선 일대'로 행위의 장소적 제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단 등 살포는 행위의 장소를 '군사분계선 일대'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정부나 여당의 말대로 접경지역 주민의 보호라는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전단 살포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등 살포행위'로 해야 했다"며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일부러 이를 비켜 갔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 제3국에서 전단 살포를 할 경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 "김정은 정권에 적대적인 성격을 띠는 전단을 남북교류협력의 대상으로 정해놓은 희비극을 만들어 놓았다"며 "개정 법률 제4조 제6호에서 '살포'라 함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등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태 의원은 "얼핏 보면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 이상한 점이 보인다.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인데 바로 이 조항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이 불쑥 나온다"며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당국과의 교류협력 시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비밀을 보장하고 남북교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과 국민들을 국가보안법 적용에서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므로 이미 남북교류협력법에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반출이나 수송수단 운행을 하면 동법 제27조 제1항 제3호와 제5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다"며 "그래서 북한 당국과의 협력과 교류가 목적이 아니라 적대적 성격을 띠는 '전단'은 반출 승인 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했다.

태 의원은 "그래서 지난 시기 역대 정부들은 대북전단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나 폐기물관리법 등 다른 법의 적용을 통해 처벌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대북전단금지법에서 '살포'라는 개념 정의를 통해 앞으로 전단 등을 보내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남북교류협력법상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던 것을 '남북교류협력법'이 아니라 '남북관계발전법'의 개정으로 강제로 반출 승인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 웃기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북한말로 표현하면 '소가 웃다 꾸레미 터진다'고 한다. 법으로 승인을 받도록 규율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승인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어야 하는데 당연히 승인을 해 주지도 않을 대상을 승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법에 대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 종일 웃어도 모자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반출 승인 없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그것이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의 구성요건과 같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졌고 결국 지금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지금 우리 국민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또 "이 법의 미수범 처벌 규정도 웃긴다. 개정 법률 제25조 제2항은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의 구성요건을 보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전단을 살포하여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국민의 생명에 대한 위해 발생 등의 결과까지 초래한 행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그런데 형법학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에 관해서는 통설 내지 다수설과 판례 모두 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제25조 제2항의 미수가 전단 등 살포의 미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생명에 대한 위해 등의 결과 발생의 미수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해석상의 문제도 발생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주와 함께 기쁨으로 고난 받은 매서인들 » 7면

유튜브 추천 찬양 예수, 늘 함께 하시네 » 22면

대형마트에도 등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9일 경북 경산시 중산동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 경산점에서 '휴마시스 코비드-19 홈 테스트'가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황우석 사태'와 기독교 생명윤리에 대한 성찰

박상은 원장, 8일 '성산포럼-생명윤리 집중과정'서 발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서울기독의사회가 지난 8일 오후 서울역 지하 1층 회의실에서 '황우석 사태 이후 15년, 생명윤리학적 성찰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성산포럼-생명윤리 집중과정'을 개최했다.

황우석 사태는 체세포 복제 인간배아 줄기세포와 관련, 당시 황우석 서울대 수의대 교수팀의 논문 조작 파문을 말한다. 난치병 치료 등에 대한 희망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았지만, 수정 이후 인간의 배아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생명윤리 문제도 강하게 제기됐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박상은 원장(안양샘병원 미션원장, 한국생명윤리학회 고문·사진)은 "지금은 그의 연구가 대부분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으나, 당시만 해도 황우석 교수와 그의 연구는 우리 사회의 미래로 부각되면서 국민들에게 장밋빛 환상과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를 가져올 것이라는 맹목적 믿음을 심어주었다"고 했다.

그는 "그 가운데 그의 연구가 지닌 윤리적 한계와 문제에 대한 고찰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그의 연구에 문제를 제기하는 자는 정당한 논리적 반박 없이 즉각 '매국노'로 '매도'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박 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아는 인간의 초기 생명'이며, 함부로 복제하거나 파괴할 수 없는 귀한 존재임을 외치는 소수의 소리가 있었고, 그 가운데 기윤실(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낙태반대운동연합(낙반연), 성산생명윤리연구소, 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이 함께 존재하였다"고 했다.

그는 "기윤실은 이 운동을 통해 인간의 초기 생명인 어린 배아의 생명권을 주장하였고, 배아복제 연구가 생명파괴는 물론이거니와 난자 채취의 부작용으로 인해 여성의 인권을 유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했다"며 "이는 곧 불확실한 '공리주의'라는 허상 아래 힘 없이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권리에 대한 외침이기도 했다"고 했다.

또 "운동의 과정에서 낙반연과 생명협회를 비롯한 기독교환경운동연합,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 새벽이슬 등 총 27개 단체가 한데 연합하여 기독교대책위를 꾸리려는 노력도 있었으나, 성사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다"며 "그러나 이후 성명 발표와 캠페인 활동에 몇몇 단체가 협력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고, 또 성산연구소의 박재현 교수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자문역할이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고 했다.

박 원장에 따르면 지난 2004년 2월 23일 당시 한국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와 성산생명의료윤리연구소, 한국누가회 생명윤리위원회, 낙태반대운동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는 "인간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를 융합시켜 만든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자기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미약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인간 생체실험이며, '살인하지 말라'는 보편적인 도덕법을 범한 윤리적인 범죄행위"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다.

아울러 박 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과거 자신이 밝혔던 견해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인간 배아 복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는 순간부터 즉 배아의 상태도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생명이라는 개념은 단절된 과정, 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생명이라고 정의할 수 없고 연속적인 과정에서만 설명될 수 있다"고 했었다고.

또 지난 2001년 5월 22일 생명윤리기본법 공청회 당시 "과학자들은 인간의 생명의 단계를 여러 개로 구분하지만, 생명 발전의 경계선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든 과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마치 착상이 중요한 변화처럼 생각하지만, 착상 이전과 이후에도 배아 자체에 현격한 차이는 없다. 그래서 저는 배아라는 말 대신에 '배아기 인간'이라는 표현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김진영 기자